GREEN:ING for a better lif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144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12.3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16.

카페그리닝

정 보 공 개 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지알엔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118호(고잔동,씨티프라자)		
대표번호	1877-6416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miss2362@nate.com
전화번호	1877-6416	팩스번호	-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7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1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2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9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2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4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7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9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지알엔푸드	카페그리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118호(고잔동, 씨티프라자)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05.28.	김효진	1877-6416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637-22-0083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김효진/아빠는 초밥왕	아빠는 초밥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2, 115호
대표	지알엔푸드	카페그리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118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페 그리닝	셀러드 전문점
상 호	카페 그리닝 0000점	가맹점 구분
상표(서비스표)	카페그리닝	등록번호(일자) 4016637120000(2020.11.18)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샐러드.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등을 판매하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꿈꾸며 실현해 나가는 카페 그리닝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양도인(지알엔푸드)의 재무상황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57,721	15,708	242,013	494,723	18,642	21,005
2022년	207,595	12,589	195,005	596,088	32,188	32,455
2023년				120,58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효진	대표	2019.05.28.~현재	지알엔푸드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0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이사	지알엔푸드 / 김효진	가맹사업	2019.05.~현재	카페그리닝(등록번호:20191441) 가맹사업 경영
대표이사	아빠는초밥왕/김효진	가맹사업	가맹사업 개시 전	아빠는초밥왕(20240220)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카페그리닝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등록일자 2020.11.18	등록번호 4016637120000	김효진	2030.11.18
권리범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한 일 : 2019-05-28

2.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알엔푸드	카페그리닝	김효진	2019-05-28 ~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118호(고잔동,씨티프라자)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카페그리닝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음료(커피 외)	음료와 샐러드,샌드위치 전문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6	15	1	19	18	1	15	15	0
서울	2	2	-	2	2	-	1	1	0
부산	-	-	-	-	-	-	0	0	0
대구	-	-	-	-	-	-	0	0	0
인천	1	1	-	3	3	-	0	0	0
광주	-	-	-	-	-	-	0	0	0
대전	-	-	-	-	-	-	0	0	0
울산	-	-	-	-	-	-	0	0	0
세종	-	-	-	-	-	-	0	0	0
경기	12	11	1	13	12	1	13	13	0
강원	-	-	-	-	-	-	0	0	0
충북	-	-	-	-	-	-	0	0	0
충남	1	1	-	1	1	-	1	1	0
전북	-	-	-	-	-	-	0	0	0
전남	-	-	-	-	-	-	0	0	0
경북	-	-	-	-	-	-	0	0	0
경남	-	-	-	-	-	-	0	0	0
제주	-	-	-	-	-	-	0	0	0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	10	-	-	2	15
2022	15	3	-	-	3	18
2023	18	0	1	2	4	15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대표이사	아빠는초밥왕/김효진	아빠는초밥왕	20240220	일식	0/1	0/1	0/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5	182,863	14,227	669,241	34,368	47,194	3,118	15
서울	1							1
부산	0							0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13	187,587	13,888	669,241	34,368	47,194	3,118	13
강원	0							0
충북	0							0
충남	1							1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0							0
경남	0							0
제주	0							0

상기 표 내용 중 아래 각 호의 내용은 기재 또는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① 지역별 가맹점 수 5곳 미만은 기재에서 제외

② 6개월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는 연간평균매출액 산정 및 기재에서 제외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산정 및 기재

④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포는 산정 및 기재에서 제외

상기 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 배달플랫폼과 POS매출액의 합계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5	99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신문, 인터넷	2023.1.1~12.31	-	-	-	
판촉	-	-	-	-	-	
합계	신문, 인터넷	2023.1.1~12.31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지알엔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닥트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예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1. 가입비 2. 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금액
교육비	5,500	계약체결 후 예치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총 계	11,000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합계	13,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면적 3.3m^{2}당	지급 대상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22,000	2,200	별첨참조	계약체결과 동시	미공사시	10 평 기준 / 면적당 금액은 단순 환산
필수 설비	18,480	1,848			제공 후 반환 안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선 결제 필수품목
필수 집기	2,200	220				선 결제 필수품목
간판/	3,300	330				전면1면[5m]
초도 비품	5,500	550				별첨참조
총계	51,480	5,148	-		-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를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2}당 **[550]천원을 (부가세포함)**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돌출 간판공사, 외부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 → 가맹본부 동의 → 입지 확정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내역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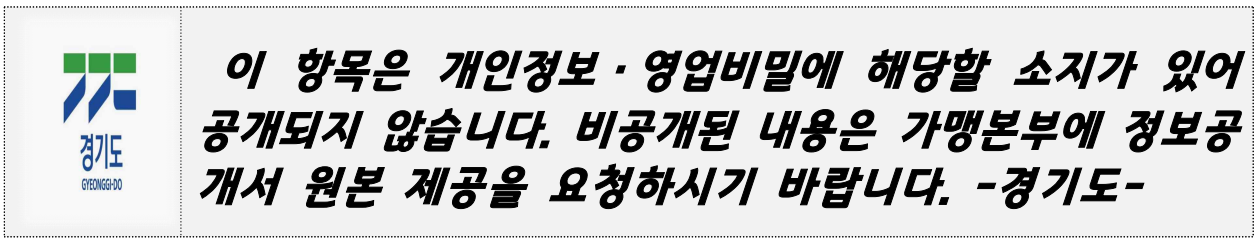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얄티	가맹본부	총매출의 3.3%	익월 말일	-	영업표지	매월 정기 납입금

					사용대가	/ 배달어플의 배달팁을 제외한 총매출
POS사용료	가맹본부	22	익월 5일	설치 전	실시 후	임대비용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30%(가맹본부) 70%(가맹점사업자)	통지 후 2주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 상품광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자)	통지 후 2주일 이내	-	-	-
	가맹본부	100%(가맹본부) :0%(가맹점사업자)	-	-	-	가맹점모집광고 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 금액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통지 후 2주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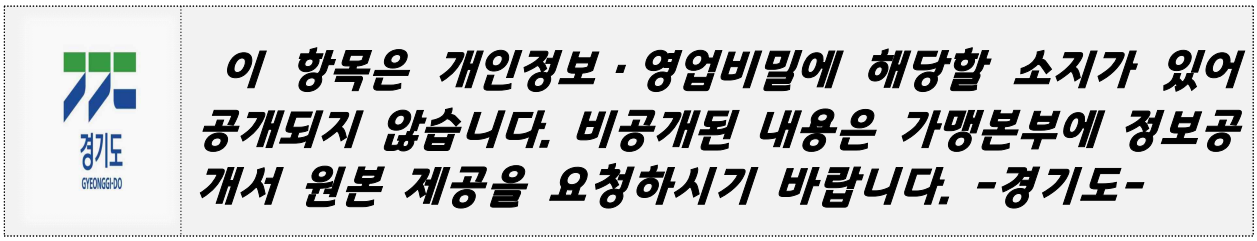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필요시	문의: 관리팀

	재고와 비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문의: 관리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한 재 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①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가맹점사업자 “을”이 양수한 사업자(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존의 가맹본부의 사업자 형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① “갑”이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을”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②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은 ‘가맹사업자’의 본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비 및 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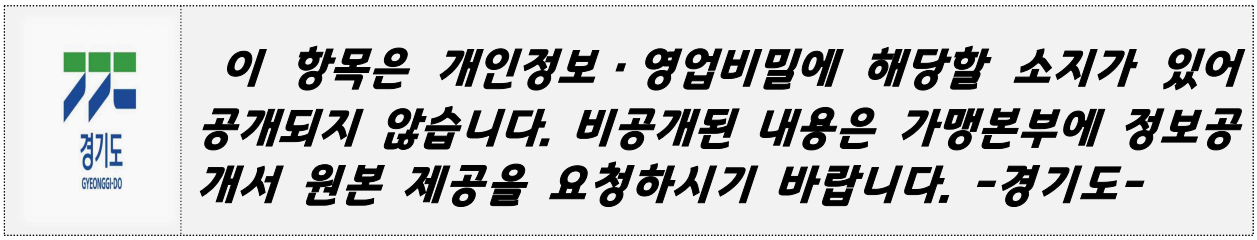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 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별첨 [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가맹본부가 권장한 가격	유선, 메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음료나 샐러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업종	카페그리닝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1,000]m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첫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단위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6조 제2항 (계약기간과 갱신)]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에 관한 사항 라.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 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4조 1항1 (25조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과 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 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4조 1항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3호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34조 제 2항 (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전 지역 내에서] 계약 기간 중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신, 가족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카페그리닝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본사 브랜드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음료와 샐러드,샌드위치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2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1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
판촉행사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판촉물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2주일 내 납입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월 할인금액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배달 어플리케이션, 카드사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월 비용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제공하는 노하우 및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④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각각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36조 1~4항
귀하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금오천만원(₩5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제35조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7조 1~4항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귀하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 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41조 1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바랍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4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D-10~5(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 제외 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 차이즈 보 증 보 험	서울 보증 보험	없음	해당 없음	가맹본부의 가맹점 피해보상보험 가입시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수시	-
특별 교육	필요시 내용 통보	이론,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훈련을 받아야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1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 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1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4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5조 (개점 승인)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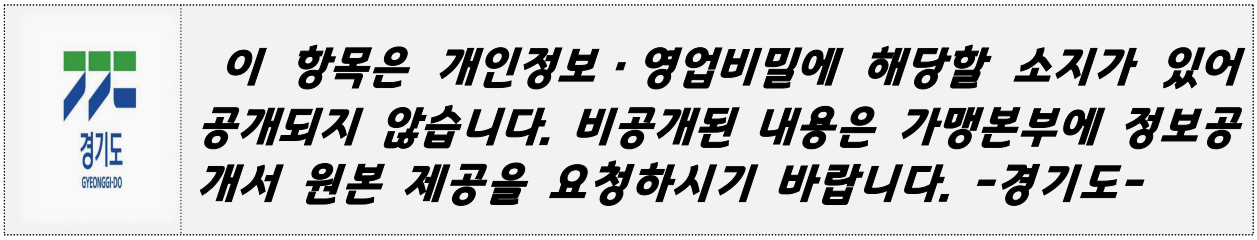

[별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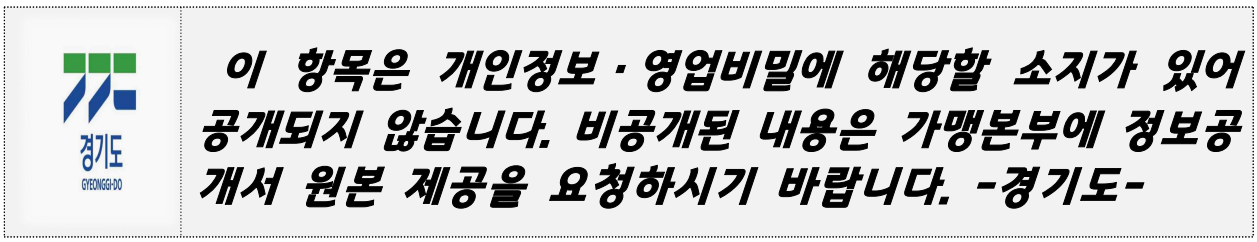

[별첨] 판매 상품 리스트(2022년 1월 기준, 변경될 수 있음)

판 매 상 품		
내 용		가격(원)
햄치즈샌드위치		5,900
햄에그샌드위치		6,500
햄에그포테이토샌드위치		7,500
닭가슴살할라피뇨샌드위치		6,900
단호박닭가슴살샌드위치		7,900
리코타치즈샌드위치		7,900
베이컨에그샌드위치		7,500
오동통새우샌드위치		8,500
오트밀그린샐러드		6,800
단호박샐러드		7,500
닭가슴살샐러드		7,500
에그포테이토샐러드		8,500
리코타치즈샐러드		8,900
크림파스타샐러드		7,900
베이컨샐러드		7,900
오동통새우샐러드		9,500
베이컨크림파스타샐러드		11,900
에그인더카야		5,500
마약콘옥수수파니니		5900
카야트리플치즈파니니		4,700
햄치즈파니니		4,700
불닭토스트파니니		4,900
매콤까르보파니니		5,900
수제생크림 카야쨈 와플		4,900
수제생크림 빼레로로쉐 와플		4,900
수제생크림 사과쨈 와플		4,500
블루베리 그레놀라 요거트		4,900
플레인 크로플		3,900
카라멜시나몬 크로플		4,300
애플시나몬 크로플		4,300
빼레로로쉐 크로플		4,500

딸기 그레놀라 요거트		4,900
허니 그레놀라 요거트		4,900
망고 그레놀라 요거트		4,900
1인용 미니 팥빙수		7,900
찹쌀떡 팥빙수		10,900
인절미 빙수		10,900
망고 빙수		12,900
블루베리 빙수		12,900
뽀얀 우유케익		5,900
천사의 누텔라 케익		5,900
트리플치즈 케익		5,900
500ml 진짜귀리우유		6,500
1리터 달달다방커피		7,900
1리터 대용량 아이스티		7,300
리얼 감자스프		5,300
리얼 단호박스프		4,900
치즈떡볶이		6,700
에그포테이토 빵		4,900
갈릭핫도그		5,300
마약토스트		4,700
아이스티카노		4,800
아메리카노		3,500
바닐라라떼		4,800
헤이즐넛		3,800
헤이즐넛라떼		4,800
카페라떼		4,300
콜드브루 커피		4,000
콜드브루 라떼		4,500
500ml 더치커피원액		9,900
카페모카		4,800
카라멜마끼아또		4,800
바닐라 빈 라떼		5,200
마약커피		4,800
달달다방커피		4,800

달달연유라떼		4,800
베트남라떼		5,500
코코넛커피		5,900
디카페인) 카페라떼		4,800
디카페인) 카페모카		5,300
디카페인) 카라멜마끼아또		5,300
디카페인) 바닐라라떼		5,300
디카페인) 바닐라 빈 라떼		5,800
오레오쿠키듬뿍		5,500
우유에빠진조리퐁		5,900
우유에빠진코코볼		5,900
얼음동동미숫가루		4,500
비비빅 팥쉐이크		4,900
밀크 쉐이크		4,900
초코에 빠진 조리퐁		5,900
딸기듬뿍라떼		5,500
망고바나나		5,900
딸기바나나		5,900
탱크보이 배 스무디		4,900
자두스무디		5,500
토마토주스		5,500
요거트 스무디 플레인		5,500
요거트 스무디 딸기		5,900
요거트 스무디 블루베리		5,900
레몬에이드		5,500
청포도에이드		5,500
자몽에이드		5,500
초코라떼		4,900
녹차라떼		4,900
밀크티라떼		4,900
민트초코라떼		5,500
얼그레이		4,500
히비스커스		4,500
루이보스		4,500

페퍼민트		4,500
카모마일		4,500
유자차		4,500
오미자차		4,900
매실차		4,900
자몽차		5,500
레몬차		5,500

[별첨] 재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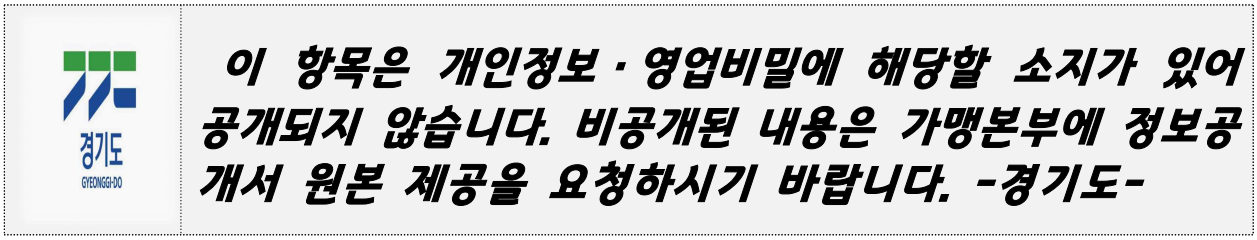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지알엔푸드	**영업표지**	카페그리닝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지알엔푸드 대표 김 효 진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지알엔푸드	**영업표지**	카페그리닝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지알엔푸드 대표 김 효 진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